



법무부
국토교통부
해양수산부
경찰청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	배포 일시	2022. 8. 12.(금)	
담당 부서 <총괄>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용성진 (02-2110-3269)
		담당자	검 사	윤석환 (02-2110-3269)

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-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-

-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, 2022. 8. 15.자로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, 주요 경제인, 노사관계자, 특별배려 수형자 등 1,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
- 이와 더불어 건설업, 자가용화물차·여객운송업, 공인중개업,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·허가,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,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,
-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

조치 내역

- ▶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·감형·복권 : 1,638명
- ▶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특별사면·감형 : 32명
- ▶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·감형 : 11명
- ▶ 주요 경제인 : 4명
- ▶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·복권 : 8명
- ▶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807명(社)
- ▶ 자가용화물차·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: 4명(社)
- ▶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: 92명
- ▶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: 569명
- ▶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592,037명
- ▶ 가석방 : 649명

-
-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(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)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
 -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,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
 - 또한, 서민생계형 형사범, 장애인·중증환자·유아 대동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
 - 특히, ①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,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, ②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
 - 아울러, 운전면허 취소·정지·벌점, 건설업,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, 여객 운송업, 공인중개업,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함
 -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,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함
-

1. 개요

-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, 2022. 8. 15.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·감형·복권과 건설업,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, 여객 운송업, 공인중개업,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·허가 관련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

순번	사면 유형		인원	
1	일반 형사범	수형자	잔형 집행면제	89명
			잔형 감형	73명
		가석방자		376명
		집행유예·선고유예자	형선고 실효 및 복권	1,099명
			형선고 실효	1명
		소계		1,638명
2	특별배려 수형자	잔형 집행면제	9명	
		잔형 감형	2명	
3	경제인	형선고 실효 및 복권	2명	
		복권	2명	
4	노사 관계자	형선고 실효 및 복권	3명	
		복권	5명	
5	중소기업인·소상공인	잔형 집행면제	20명	
		잔형 감형	12명	
6	건설업 행정제재 특별감면		807명(社)	
7	자가용화물차·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		4명(社)	
8	공인중개업 행정제재 특별감면		92명	
9	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		569명	
10	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		592,037명	
합계			595,202명	

2. 상세내용

① 일반 형사범 : 1,638명

- 수형자·가석방자 : 538명(새터민 2명 포함)
 - 살인·강도·조직폭력·성폭력·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
 - 형기의 2/3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, 형기의 1/2 ~ 2/3을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
- 집행유예자·선고유예자 : 1,100명
 - 도로교통법위반,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
 - ※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(중소·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) 6명 포함
 - 집행유예 기간 중인 1,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,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
 -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

②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: 32명

- 수형자·가석방자 중,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,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2명 선별
-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

-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
-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

【참고 사례】

▲ AOO(남, 61세)

- 공업(소상공인)
- 어음할인금 3억 8,658만원 및 차용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[사기]
-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 그 영향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음
- 사면으로 잔형 감형

▲ BOO(남, 58세)

- 제조업(중소기업인)
-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5개월간 공장을 임차하여 임대보증금 7,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및 차임 4,675만원을 지불하지 않고,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비 약 1,09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'22. 6. 30. 가석방 [사기]
-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,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음
-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

▲ COO(남, 58세)

- 제조업(중소기업인)
- 1억 3,000만원 상당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, 차용금 8,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'22. 5. 6. 가석방 [사기]
- 영업 중 해외사업 손실 등 적자 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
- 거래 과정에서 업체에 원자재를 무상제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 위해 노력하였고,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
-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

※ 수형자·가석방자 이외에,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적극 배려

【참고 사례】

▲ D○○(남, 58세)

- 건설업(소상공인)
- 5억 8,500만원 당좌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거절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(집행유예기간 중)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
- 친동생의 상가 건축 위한 차용금 담보조로 발행하였다가 친동생 도주하여 대상자가 이어 받아 완공 후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, 분양 전 상가건물 경매 실행으로 채무 미지급
- 자금악화로 범행에 이르렀으나, 변제 노력으로 3억원 이상 지급
- 사면으로 형선고실효

3] 특별배려 수형자 : 11명

○ 중증환자(형집행정지자) : 2명

-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

【참고 사례】

▲ E○○(남, 65세)

-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중증질환으로 형집행정지 중 [업무방해 등]
- 복막암이 전이되어 마약류 진통제 사용 중으로, 연명 치료 정도만 가능한 상황(기대여명 수개월 정도)
-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

○ 장애 수형자 : 1명

-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

【참고 사례】

▲ FOO(남, 40세)

- 버스 운전기사의 먹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]**
- 뇌병변장애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, 피해자 처벌불원
-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

○ 생계형 절도 사범 : 7명

- 생활고로 식품·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으로,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

【참고 사례】

▲ GOO(여, 62세)

- 노상에 진열된 7만원 상당 마늘 2점을 가져가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수형 중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**
- 피해품 반환, 피해자 처벌불원
-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

▲ HOO(남, 56세)

- 슈퍼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**
- 피해품 반환, 피해자 처벌불원
- 사면으로 잔형 감형

○ 유아 대동 수형자 : 1명

- 수형 중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

【참고 사례】

▲ 100(여, 22세)

-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이고 총 1억 3,700만원을 받아간 행위(보이스피싱 수거책)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남아 출산(22년 1월) [사기]
- 초범, 직접 취득한 이득액 거의 없음
- 사면으로 잔형 감형

4] 경제인 : 4명

-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,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,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(형선고실효) 및 복권
-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,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,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

5] 노사 관계자 : 8명

-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,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
- 주요 사면 대상자
 - 조상수(前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), 허권(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)
 - 한영석(현대중공업 대표)

⑥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: 807명(社)

-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, 건설관련 개별법에 따른 영업정지·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은 자
- 다만 불법하도급, 담합, 부실시공,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, 산업안전보건법위반(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),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
⑦ 자가용화물차·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: 4명(社)

- 자가용 화물차로 허가 받지 않고 유상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(6개월 이하) 처분을 받은 자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 운행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운송사업자
- 다만 음주운전·사망사고·무면허·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,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

⑧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: 92명

- 공인중개사법을 위반(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서명·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)하여 업무정지(6개월 이하) 된 개업 공인중개사
 -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
- ※ ⑥~⑧ 관련,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8월 14일 이전의 처분도 포함(구체적인 제재조치 해제범위는 별도 공고)

9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592,037명

-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, 면허정지·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
 -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(517,739명)
 - 면허 정지·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(3,510명)
 -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(70,788명)
- 다만,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
 -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
 -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, 난폭·보복운전, 약물사용 운전, 차량 이용범죄,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

【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】

구분	특별감면 효과	제외대상
면허벌점	△ 일괄 삭제	△ 음주운전(1회 이상, 측정불응·음주무면허·음주사고 등 포함) △ 약물운전 △ 도주차량 △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·절도 △ 단속 경찰 폭행 △허위 부정면허 취득 △ 사망사고 △ 난폭운전 △ 보복운전 △ 무면허운전 △ 양육비 미이행 △ 초과속 위반(80km 이상 초과) △ 어린이·장애인·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△ 과거 3년 이내 정지·취소·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
면허정지	△ 대상자 → 집행철회 △ 기간중 → 잔여기간 면제	
면허취소 (대상자)	△ 취소처분 철회	
면허취득 결격기간	△ 결격기간 해제	

10 어업인 면허·허가어업 및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: 569명

- 중대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면허·허가어업 및 양식업과 해기사 면허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·정지 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

면허·허가어업 및 양식업 경고·정지 처분 기록 삭제	264명
해기사면허 정지 처분 기록 삭제	305명

【참고 사례】

▲ J○○(남, 67세, '제1길○○'호 선장)

-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장은 허가 외의 어구 적재 위반으로 단속 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해기사면허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(1차 30일, 2차 45일)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,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음
-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해기사면허 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, 차기 위반 시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처분(1차)을 받아 어선의 선장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

3. 이번 사면의 특징

①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면

가.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적극 사면

- 코로나19의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
-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

나. 주요 경제인 사면

-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
-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다. 건설업 면허, 자가용 화물차,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

-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내수·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
-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(6개월 이내) 처분을 면제하여 정상적인 생업활동 도모
-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회복 도모

② 노사 통합을 위한 사면

-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
- 노사의 통합을 도모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감으로써,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

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

-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
- 중증질환자, 유아 대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

④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

가.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특별감면

-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(6개월 이내) 처분을 감면하여,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나.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

-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,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

다. 생계형 어업인 해기사면허 등 제재 특별감면

-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해기사면허 제재 등을 감면하여,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☑

담당부서	소관사항	책임자(연락처)	
법무부 형사기획과(총괄)	특별사면·감형·복권	과 장 용성진	(02-2110-3269)
		검 사 윤석환	
법무부 공공형사과	특별사면·복권	과 장 박규형	(02-2110-3280)
		검 사 조현웅	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	과 장 김근오	(044-201-4597)
		사무관 김종욱	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자가용 화물차 운행제한 행정제재 특별감면	과 장 박진홍	(044-201-4021)
		사무관 이경섭	
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	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	과 장 김경현	(044-201-3824)
		사무관 박상범	
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	공인중개업 행정제재 특별감면	과 장 백승호	(044-201-3413)
		사무관 연규성	
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	어업면허·허가·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	과 장 임창현	(044-200-5565)
		사무관 장수복	
경찰청 교통기획과	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	과 장 양우철	(02-3150-2253)
		경 정 이창민	